

論說

林 地 整 備 論

申 孝 堂*

Reorganization of forest ownership

Hyo Dang Shin*

一 非生產林地的利用開發과 所有制度—

國土의 合理的인 利用開發을 爲하여 林地를 再編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가? 나는 이點에 있어 現在의 林地所有分布狀態가 不備 또는 不合理的하다는 어떤 絶對的인 根據로써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林地와 農耕地의 比率 그리고 非生產的인 遊休地를 開發活用하는데 있어 平素에 생각하든마를 土臺로하고 이에다가 國土建設의 見地에서 若干의 探究를 加하여 本文을 起草하는 것이다.

一.

林地는 國有나 公有 또는 私有 어느 것이 많고 적어야 된다는 原則의 主張은 세우고 싶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問題가 어떻게 하면 荒廢한 林地에다 하루빨리 造林育成하여 그 國土의 荒廢를 免하고 林業生產國이 될 수 있을 것인가한 이 主目標이라고 하면 國有든 公有 私有의 어느 것이 된다고 해서 그 目的이 보다 迅速히 達成되리라는 確信이 설 것은 아닌 性質이기 때문이다.

二.

世界의 一般的인 林野所有分布實態를 본다면 아직도 全林地의 半以上이 國有 및 公有이고 經營도 또한 그에 隨伴하여 國營이라고 한다. 歐州에서도 全林地의 54.0%가 國家及公共團體의 所屬인 것이다. 이點에 있어는 各國의 實情이 다 다르나 國有林이 가장 優勢하여서 公有나 私有林(會社所有林 邑舍)이 적은 나라는 “카나다”로서 國有林이 93.5%이고 私有林은 겨우 6.5%이다. 芬蘭이 國有林 2.9% 私有가 33.8%이며 瑞西에서는 國有林이 4.6% 公有가 67.3% 私有가 23.1% 그리고 丁抹의 實態를 보면 國有林이 24.6% 公有가 24.4% 私有林이 51.0%이니 이와 비슷한 數字를 가진다

라로서는 獨逸과 佛蘭西를 들 수가 있는 것이다. 私有林이 많은 나라는 스웨덴 노루웨이 美國等인데 스웨덴은 國有林이 19.9% 公有林 4.6% 私有林이 75.5%이고 노루웨이는 國有林이 15.0% 公有林이 7.0% 私有가 78.0%이며 美國에서는 國有林 19.0% 公有林이 1.9% 私有林이 79.1%인 것이다. 國有林이 없고 私有林이 많은 나라는 英國이 特殊한 狀態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所有別林野面積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資料 1960年度版林業統計要覽)

國有林	974.125町步	14.5%
王室林	31.72町步	0.6%
歸屬林	370.956町步	5.5%
公有林	570.177町步	8.5%
寺刹林	91.925町步	1.3%
私有林	4674.082町步	69.5%
計	6721.054町步	100.0%

(資料 農林部山林局發行 「韓國의 林業」에 依함)

上表에 依하면 南韓의 林野面積에 있어서 는 私有林이 七割을 占하였고 國有는 二割에 不適當한 것이다. 日本의 私有林面積이 全林野面積의 42.9%에 比한다면 個人所有權의 發達は 高度로 推進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三.

韓國의 오늘날의 林野狀態는 莫甚한 荒廢相을 이루고 있는 實情이니 荒廢事實이 林野所有의 分布實情에도 關聯이 있는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現在와 같은 林野所有分布狀態는 日政時代의 그것에서 큰 變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日政時代의 實情을 돌아본다면 戰爭末期의 無分別한 濫伐에 큰 原因이 있는 것이니 이點에서 山林荒廢는 所有 分布의 關係보다 1954年을 前後한 濫伐에 基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荒廢林野를 復舊하는데 있어 所有關係의 再編成에 依하여 造林을 促進하는 方法을 講究할 수 있을가도 생각할 수 있는 問題이고 造林對策으로의 所有變動에 依한 效果를 覓을 수 있을가도 한번 探究할 수 있을 것이다. 耕地의 國有가 적음에 比하여 林地의 國有나 公有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耕地의 私權이 發達한 時代에

* 農林新聞社 社長

도 林地는 누구도 利用하지 않는 無主物로 殘存하였던 것이다 林地의 生産의 利用을爲함 보 다도 王侯또는 勢力家들이 風水說에 依한 墓地 獲得策으로 占有하고 他人의 開發利用을 禁하여 왔던 것이다 即大部分의 林地所有는 墓地所有이었고 生産을爲한 林地所有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觀念의 傾向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이 그 階性을 推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四.

林地의 再編成問題는 森林의 育成 保護를爲하여 또는 國土의 適正한 開發利用을爲하여 앞으로 반듯이 論議될 對象의 問題이다 特히 近者에 國內에서도 農用林制度의 必要性을 盛히 論하고있는 것이니 林地를 必要한 生産者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林業經營은 그規模가 크면 클수록 有利하다는 것이니 여기에 山林組合의 必要性을 느끼게 된다. 即 森林의 所有權은 個個로 하면서도 그 收益權과 費用의 負擔만을 共同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과같이 人口密度가 높고 또 林產物需要가 엄청나게 늘어가는 이때 이니만치 一般的인 農家經濟의 發展을爲하여는 반듯이 農家林地를 造成하기爲하여 土地分配와같이 林地再分配를 實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林業은 他企業과같이 그 業績에 있어 勝負가 빠르지 못한뿐만 아니라 資本家와 企業家가 分化되기 어려운 까닭으로 企業化林業은 發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林業은 短期間의 經營으로서 利潤을 얻을수있는 것이 아니고 또 經營의 成敗가 決定되지 않는 것이다 그 經營은 土地와 資本을 長期間 固定시키는 것이므로 적어도 數世代를 계속하는 事業이다 借地造林이나 林業小作 같은 것은 있기 어려운 것이다 地主와 經營主가 分離되는 境遇도 있기는 하지만 分離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여기서 林地所有의 分佈問題는 森林造成

의 將來에 對하여 重大한 影響이 있을것은 勿論이다.

造林할수있고 守護할수있고 生産할수있는 사람만이 林地를 所有하는 方法의 講究가 緊要한 것이다 國有는 國家로써 造林과 守護를 責任질수없다면 民間에게 讓與하여 造林과 生産의 徹底를 期할것이고 民有林도 마찬가지로 所有者가 造林守護를 못하고 經濟的利用에 充치 못할때는 當然히 他에 그 所有를 讓渡하는 方法과 雅量이 必要한 것이다.

林地所有의 目的이 林地活用과 林業生産에 있지 않고 그 廣大한 林地內에는 몇十坪의 墓地守護에 그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國有 民有를 莫論하고 造林事業이 不振할수밖에없고 國土建設上 重大한 支障을 免치 못할 것이다.

要컨데 韓國의인 林地所有觀念을 是正할 必要가 林地再編成에 앞서는 것으로 思料된다 即 林地所有는 林業生産을爲한 必要에도 思考轉換이 緊要함을 意味한다 그리고 林野所有者에게는 造林守護와 林業生産의 責任을 지우는 方法의 講究가 必要한 것이다 國土建設의 大前提에 依하여 責任을 다하지 못하는 林野의 所有權에 對하여는 一定制度를 設하는 것도 좋은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名門巨族의 林野所有制에서 林地活用과 林業生産의 有制로 林地再編成이 要請되는 것이니 農家林地制에 依한 林地分配도 그 育林의 所有制에 符合되는 바이고 其他非生産的인 放置狀態下에 있는 林地는 國公國有를 莫論하고 斯業을 專門하는 企業體에 그 權利를 讓與하여 國土建設事業推進에 支障을 除去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생각한다.

오늘날과같은 山林荒廢期에 있어 利用開發을 못하고 遊林하고있는 林地所有權을 何等의 計劃도없이 끝끝내 保有하고있는 까닭은 무엇일까?